

NH투자/이지영(유통/섬유의복) 면세점 제도 개선안 발표

■ 면세 특허기간 다시 10년으로

- 시내 면세점의 특허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고, 이후에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갱신이 허용. 다만, 독과점에 대한 우려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경우 면세특허 갱신 시 총 평가점수에서 일부 감점이 있을 수 있음

■ 수수료율은 최대 20배 상승

- 현행 수수료율은 매출액 대비 일괄적으로 0.05%인데, 구간별로 0.1~1.0%까지 상승. 매출액 2000억 원 이하는 0.1%, 2000억~1조원은 최대 0.5%, 1조원 초과는 최대 1.0% 수준. 중소·중견기업 면세점에 대해선 현행 특허수수료율 0.05%를 유지

■ 기존 시장 예상치와 크게 다르지 않아, 중요한 것은 4월에 발표되는 신규사업자 선정 여부

- 금번 개정안은 기존 시장 예상치와 다르지 않아 관련 관련기업의 주가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파악
- 중요한 것은 4월에 발표되는 신규사업자 선정여부인데, 선정 확정 시 시장지배적 사업자보다 신규사업자에 대한 투자심리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

NH투자 (유통/섬유의복 02-768-7654)

Compliance Notice

-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고지 사항

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분석한 결과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위해 작성된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를 판단하기 위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지적 재산권은 당사에 귀속되며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, 대여할 수 없습니다.